

●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6-12호

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

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의3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의4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사용 중인 건강진단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별지 제104호의5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[별지 제4호의3서식]

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(제17조제2항 관련)

기관명 :

기관코드 : □□-□□-□□□□

성 명	주민등록번호	방사선작업기간	혈색소량 (Hb, g/dl)	적혈구수 (RBC, $10^6/\mu\ell$)	백혈구수 (WBC, $10^3/\mu\ell$)	혈소판수 (PLT, $10^3/\mu\ell$)	특이사항

방사선안전관리자 : (서명)

붙임 :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(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4호의5서식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고방법 등) ① (생 략)	제17조(보고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 호서식, 별지 제4호의2서식, <u>별 지 제4호의3서식</u> 및 <u>별지 제4호 의4서식</u> 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별 지 제4호의3서식</u>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